

화순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등) ①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 (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증명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①지역보건법 제9조 제14호 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 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①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주간 단기보호시설 이용료
4. 유료접종
5. 수질검사

6. 구급차 사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 ①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납부)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수수료(제5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원)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	1통	30,000
3.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1,000
4. 1통 초과발급		1,000
5. 치석제거	1회	30,000
6. 복합레진	1치아당	30,000
7.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 입소료	1인/1일	5,000
○ 이.미용료	1회	2,000
○ 목욕료	1회	1,500
8. 단기보호시설 이용료		
○ 입소료	1인/1일	11,000
○ 이.미용료	1회	2,000
○ 목욕료	1회	1,500
9. 유료예방접종	1회	약품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10. 수질검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	1회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2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항목	1회	
11. 구급차 사용료		

[별표 2]

수수료감면 기준(제6조 관련)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감 면 비 율 (%)				비고
	치석 제거	복합 레진	주간보호 시설입소료	수질검사 및제증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50	50	100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00	
수사기간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50	100	100	

[별지 제1호 서식]

수질검사 신청서

수질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일
의 뢰 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⑥수 량			
⑦채취장소			
⑧시험의뢰항목			
⑨시험의뢰목적			
⑩시험성적서 부수			
⑪시험성적서 발송방법			
화순군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화순군보건소장 귀하			
※ 첨부물 : 가검물 ℓ			수수료

[별지 제2호 서식]

수질검사 접수증

번호	수질검사 접수증		
건 명			
수 수 료			
처리기간	년 월 일 ※ 시험장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화순군보건소장			

[별지 제3호서식]

수질검사 결과 교부서식

화순군보건소

(519-807) 주소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19(전송 370-1597)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화순군보건소장
제 목 : 수질검사 결과 교부

귀하가 년 월 일 우리보건소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화순군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수질검사 결과

①의뢰일시					
②의뢰자					
③검체채취방법					
④검 사 결 과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⑤판 정					

※ 기타(시험성적서 이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 등)